

# 기금운영 규정

제정 2010년 03월 26일

## 제 1 조

본회는 본회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## 제 2 조

본회는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확장
- ② 기금의 운용
- ③ 기타 기금조성 및 그 확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 3 조

다음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① 기금 조성 및 폐지
- ② 기금 원금 수정
- ③ 기금의 확장
- ④ 기금의 전용

## 제 4 조

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관련한 운영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 제 5 조

기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6 조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1. (제정)본 규정은 2010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10년 6월 18일

## 제 1 조 (목적)

본 세칙은 정관 제4조 및 기금운영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기금의 재원)

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.

- ① 종신회비
- ② 외부 기부금
- ③ 학회 운영 잉여금
- ④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
- ⑤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
- ⑥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과실금

## 제 3 조 (기금의 명칭)

기금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하며, 세부사항은 본 세칙 제7조에 따라 집행토록 한다.

- ① 기탁자 또는 단체
- ② 분과회 또는 지부
-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영 희망 방안

## 제 4 조 (기금의 용도)

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은 원칙적으로 그 기금에 재투자하여야 한다. 다만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, 일부 혹은 전부를 타 기금으로의 전용 내지 과실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.

- ① 기금의 설정 용도가 제시되었으며, 이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해당 용도
-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당용도
- ③ 본 학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용도

## 제 5 조 (기금의 운용)

기금의 수익금은 이사회 결의 사항에 준하여, 회장단이 운영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 제 6 조 (기금의 분류)

기금은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설치한다.

- ① 이 세칙을 개정하기 전에 존재했던 기금 중에서 종신회비, 일반기금 1, 일반기금 2, 일반기금 3 등은 지속 분리 혹은 통합, 기금명을 학회발전기금으로 개명하여 존속시키고, 용

용융아연도금 발전기금(가칭)을 신설한다. 추후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일반 회계로부터 전용하여 추가로 기금을 신설할 수 있다(학술상 기금, 교육발전 기금, 홍보 기금, 퇴직기금, 분과회 지원 또는 지부 지원 기금 등)

- ②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조성되는 기금중 (1)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회발전기금으로 한다.

#### **제 7 조 (기금의 관리)**

기금은 세칙 제3조와 제5조, 기금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관리토록 하며 각 기금 및 과실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① 학회발전기금: 사업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용융아연도금 발전기금(가칭): 수익금 일부를 매년 용융아연도금 분과 활동비로 사용
- ③ ○○기금:
- ④ ○○기금:
- ⑤ ○○기금: 과실금 전액 적립
- ⑥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: 위탁자와 협의

부칙

#### **제 8 조 (과실금)**

세후 이자수입과 전기잉여금을 합산한 수익금을 과실금이라 칭한다.

#### **제 9 조 (기타)**

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## **제 10 조**

(제정)이 세칙은 2010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